

# 1. 宅地開發促進法 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4,723號 1995. 7. 6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의 자족기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용 도시형공장

제3조 본문중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대상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상세계획의 입안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제8조 제6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상세계획에 관한 사항

제11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를 “특별시·광역시·도”로, “도지사(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3조의2 제6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택지의 위치·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중 “도지사(서울특별시

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시·도지사”로, “도지사”를 각각 “시·  
 도지사”로 하고, 동항 제1호중 “60만”  
 을 “330만”으로, “변경지정”을 “변경지정  
 에 관한 권한”으로 하며, 동항 제2호중  
 “60만”을 “330만”으로, “고시”를 “고시에  
 관한 권한”으로 하고, 동항 제3호 및 제4  
 호중 “60만”을 각각 “330만”으로 하며,  
 동항 제8호중 “선수금”을 “선수금 및 토

지상환채권발행”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도지사가 제1항 제3호”를 “시·도지사가  
 제1항 제5호”로 하며, 동조 제4항중 “도  
 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시·도지사가 승인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를 60만제곱미터미만에서 330만 제곱미터미만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택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개발된 택지의 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택지공급시 이를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며, 기타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리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당신의 집이라면 부실공사 하겠습니까?**